

##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결정·고시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
2019. 9. 11.

남 양 주 시 장



1. 고시내용 : 도로변대기측정망 설치계획
2. 설치목적 : 도로변 대기오염도 파악 및 환경기준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, 대기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자료 활용
3. 설치장소·시기

측정소명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설치시기
경춘로	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산3109-4 (도농역 앞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부근)	10	'19. 12.

4. 측정항목 : 미세먼지(PM-10), 초미세먼지(PM-2.5), 오존(O<sub>3</sub>), 아황산가스(SO<sub>2</sub>), 질소산화물(NO<sub>x</sub>), 일산화탄소(CO), 풍향, 풍속, 온도, 습도
5. 측정방법 :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대기환경측정방법,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
6. 환경기준(환경정책기본법)

구 분	PM-10(μg/m <sup>3</sup> )	PM-2.5(μg/m <sup>3</sup> )	O <sub>3</sub> (ppm)	SO <sub>2</sub> (ppm)	NO <sub>2</sub> (ppm)	CO(ppm)	
환경기준	1h 평균치	-	-	0.1 이하	0.15 이하	0.10 이하	25 이하
	8h 평균치	-	-	0.06 이하	-	-	9 이하
	24h 평균치	100 이하	35 이하	-	0.05 이하	0.06 이하	-
	연간 평균치	50 이하	15 이하	-	0.02 이하	0.03 이하	-

## 7. 측정망 위치도 및 배치도

- 측정소 : 경춘로(다산동 산3109-4)

